



학교 이름:

DC 특구 거주사실 증명서

이 양식을 작성할 때에 거주사실 증명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A. 거주확인증명서(학생용은 교직원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 은 학생 ,의 부모/가디언/후견인임을 증언합니다.
(부모, 가디언 또는 후견인 이름) (학생 전체 이름)

.....
(현재 DC 집 주소)

.....
(전화 번호.(적용시))

학생이름은 귀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콜롬비아 특구 거주자로 확인 받기 위해 다음서류를 제출합니다.

(A) 다음 중 한가지 서류:

- **급여 명세서**
거주사실확인을 위한 45 일 이내 발급된 급여명세서로 학생의 후견인 이름, 워싱턴 특구 주소와 세금납부 년도의 와싱턴 특구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이 적용된 것
- **콜롬비아 특구에서 받은 재정 지원 공문서**와 후견인에게 발급한 12 개월이 지나지 않은 거주사실확인증명서, 불우이웃 일시 지원금(TANF),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증서(SCHIP)와 주택지원금 등등 관련서류
- **지원금통지서**로 과거 12 개월 이내에 거주사실증명서를 위한 후견인에게 발급되고 주소지가 워싱턴 특구인 경우
- **D40 양식 복사본**으로 세금납부연도에 워싱턴 특구에 세금을 납부한 증빙으로 학생 후견인의 이름으로 워싱턴 특구 세무서에서 발행된 것
- **군인사택거주명령서**로 학생이름, 학생의 후견인과 거주인 이름과 워싱턴 특구내의 주소지가 있는 서류
- **콜롬비아 거주 증명서**로 법원명령서나 워싱턴 특구 어린이와 가족지원센터의 공식 문서등(이 서류가 거주사실증명서로 사용시에 파트 시 서명은 필요하지 않음)
- **대사관 편지**로 현 학사 개시년도 4 월 이후에 발급되고 학생의 후견인 이름과 학생과 후견인이 콜롬비아 특구내의 대사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진술과 대사관 공식인장이 있는 경우

(B) 또는 위의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다음 서류 중 두 가지를 제출하십시오(아래서류의 주소와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 만기가 지나지 않은 워싱턴 특구 자동차 등록증으로 학생의 후견인 이름과 주소지가 있는 경우
- 만기가 지나지 않은 임대나 월세계약서 또는 월세납부용으로 취소된 수표로서 거주사실 증명을 위한 2 개월 이내의 서류로 학생이 살고 있는 워싱턴 특구 주소지인 경우
- 만기가 안된 워싱턴 특구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비운전자 신분증으로 학생의 후견인 이름과 워싱턴 특구 주소지가 있는 경우
- 공공요금 청구서(가스, 전기, 수도납부 증명서도 유효함)으로 학생의 후견인 이름과 워싱턴 특구내 주소가 있는 경우로 납부 영수증이나 또는 취소된 수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납부된 영수증과 취소된 수표는 발행일이 주소지 사실증명서 확인 2 개월 이내일 것

(C) 위의 서류가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 학생은 노숙자이며 학교의 노숙자 학생은 OSSE 에 관련서류를 담당자가 제출함을 확인 합니다.(이 경우에 주거사실로 사용되며 파트 시에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입학생으로 등록된 자는 자택방문을 동의 하였고 방문이 이루어졌고 **거주사실 증명서**와 **자택방문 동의서**가 작성되어 거주사실이 확인되었습니

본인은 위증죄 위반시 벌칙사항을 이해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또한 모든 서류를 학교내에 보관하고 OSSE, 외부감사와 타기관, 워싱턴특구 감사원과 법무부의요구에 따라 열람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학교 관계자 서명

.....
날짜



파트 B. 후견인 증명서(학생의 후견인이 부모나 법원명령에 의한 보호자 또는 가디언이 아니라면 교직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후견인”이란 부모나 법원명령에 의한 보호자 또는 가디언으로 학생과 함께 거주하며 학생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후견인은 파트 에이에서 언급한 워싱턴특구에 거주하며 후견인으로 신분자격을 가져야 한다.

본인은 파트 A 에 이름을 올린 후견인으로 “후견인”으로서 신분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 중에 한가지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학생의 후견인으로 전년도 증명서로 서명한 성적증명서와 같은 문서;
- 예방접종이나 건강기록 카드 등으로 지난 12 개월 이내에 거주사실 증명을 위해 발급받은 서류로 학생의 후견인임을 보여주는 문서
- 연방정부나 콜롬비아 특구 정부에서 발행된 공식문서로 지난 12 개월 이내에 거주사실증명으로 발급된 문서로 학생을 대신해 후견인인 공적 혜택이나 의료 혜택을 받은 문서로 생활안정지원금 통지서나 TANF 소득증명서 또는 재승인 확인서 등의 문서
- 서명한 후견인 선서문(OSSE 발급)로 학생의 후견인임을 적시한 문서
- 후견인 증명서(OSSE 발급)학생과 관련된 후견인에 대한 법적, 의료적 또는 사회적 책임을 입증하는 문서로 거주사실증명을 위해 지난 12 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

본인은 위증죄 위반시 벌칙사항을 이해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또한 모든 서류를 학교내에 보관하고 OSSE, 외부감사와 타기관, 워싱턴특구 감사원과 법무부의요구에 따라 열람이 가능함에 동의합니다.

.....
(학교 관계자 서명)

.....
(날짜)

파트 C. 부모/가디언/후견인 또는 성인학생은 DC 특구 거주자인임을 서약합니다.

학생 전체 이름: 저는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하나 체크) :

- 위 학생의 가디언/부모/ 후견인
- 위의 학생(18 세 이상으로 성인)

본인은 다음 주소에 거주함을 증언 합니다.
(주소)

본인은 DC 특구 공립학교나 특수학교 또는 DC 교육구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입학생으로 워싱턴 특구 거주자임을 거주자 맹세와 거주 증빙 서류로 선언 합니다. 이 맹세가 거짓이라면 학생으로 수업료 납부를 하고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퇴함을 선언합니다. 이외에 워싱턴 특구 코드 38-312 에 의거 어느 누구도 학생의 거주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정보제공을 하면 2000 불 이하의 벌금이나 90 일 이하의 구류에 처분되나 벌금과 구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주거와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며 콜롬비아 특구 정부가 합법적으로 본인의 거주사실 증명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허락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나 학생의 거주변경을 변경일 3 일 이내에 학교에 통보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부모/가디언/후견인 또는 성인학생 프린트 이름)

.....
(전화 번호)

.....
(부모/가디언/후견인 또는 성인 학생 서명)

.....
(날짜)

위증죄에 대한 벌칙사항

콜롬비아 교육구의 공립학교나 특수학교 직원을 포함한 누구든지 학생의 거주 증빙서류와 관련된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 하는 수업료의 배상, 2000 불 이하의 벌금이나 90 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나 벌금과 구류가 동시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콜롬비아 교육구 비거주자 수업료 납부 법안에 의거하며 1960 년 9 월 8 일 제정되고 2012 년 콜롬비아 교육구 공립학교와 특수학교 학생거주 위반방지 수정



법안에 따릅니다(DC 코드 38-312). 해당 사항 관련자의 경우에는 콜롬비아 교육 대학교 위원회 법무실로 연락바랍니다.